

2021년 하반기 경찰공무원(순경)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

- 수 사 -

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22조,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순경)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1년 8월 30일

해양경찰청장

1. 관련근거

- 가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 및 제10조(신규채용)
- 나.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25조(시험의 방법) 및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 등

2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수 사(25명)	
	남자	여자
채용인원(명)	18	7

3. 자격요건

가. 응시자격 및 연령

자 격 요 건	응시 연령
경찰(경찰행정) 또는 법학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(복수전공 포함)	20세이상 40세이하 ('80.1.1. ~ '01.12.31.)

※ 응시연령 상한 연령 :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, 2년 이상은 3세(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)

나.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의 적용을 받아 복무 중인 사람(현역) 중 「임용유예」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는 교육원 입교 예정일('22.2.19.) 전까지 전역이 가능해야 합니다.

다. 최종시험예정일('21.12.14.) 기준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,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라. 경력계산,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('21.12.14.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마. 신체 기준표(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별표 4))

구 분	내용 및 기준
체 격	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,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,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.
시 력	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이어야 한다.
색 신 (色神)	정상 또는 색약(약도)이어야 한다. 다만,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. *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(부정행위로 처리,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)
청 력	청력이 정상(좌우 각각 40데시벨(dB)이하)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(이어야 한다).
혈 압	고혈압·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. (확장기 90 ~ 60mmHg, 수축기 145 ~ 90mmHg)
문 신	시술동기,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,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 *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(부정행위로 처리,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)

4. 원서접수

- 가. 접수기간 : 2021. 9. 1.(수) 18:00 ~ 9. 9.(목) 18:00 [9일간]
※ 응시표는 2021. 9. 13.(월) 10:00 이후부터 출력가능
- 나. 접수방법 : <http://gosi.kcg.go.kr>에 접속, 안내에 따라 접수
※ 응시수수료 5,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.
- 다. 접수취소 : 2021. 9. 10.(금) 18:00까지 가능하며,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.
- 라. 응시원서 사진 :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(3cmX4cm) 업로드
※ 배경 있는 사진,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
- 마.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 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.

5. 시험일정 및 장소

구 분	시험일정 (예정)	장 소	합격발표
필기시험 (논문형)	11.6.(토)	인천 지역 (세부장소 별도공지)	11.12.(금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
종합적성검사	11.20.(토) ~ 26.(금) (세부일정 별도공지)		-
신체·체력검사		추후 공지	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
서류전형	12.1.(수) ~ 3.(금)	해양경찰청	불합격자만 개별통지
면접시험	12.14.(화) ~ 17.(금)	추후 공지	-
합격자발표	12.28.(화)	해양경찰청 홈페이지	

※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적성·체력검사,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『채용공고』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kcg.go.kr>)에 공지 예정입니다.

6.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

가. 필기시험

- 1) 평가방법 및 내용(60분)

평가방법	내 용
논문형 필기시험 (서술1, 약술2 문항)	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

- 2) 합격자 결정 : 총점의 60%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

나. 종합적성검사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검증합니다.

※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.

다. 신체·체력검사

- 1) 신체검사
 - 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「해양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」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「신체 조건표」와 「신체검사 세부기준」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※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2) 체력검사
 - 종목 : ① 100미터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50미터 수영
 -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(30점)의 40% 이상(12점)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 - ①~③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.
 - ④ 종목의 경우에는 기준(남자 130초, 여자 150초 이내) 미달 시 불합격으로 합니다.
 - 기타 평가기준은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별표5(별첨)에 따릅니다.

※ 도핑테스트 실시 : 응시생의 5% 내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(별첨)

라. 서류전형 :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
다음 페이지 계속 ↓

다. 면접시험 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발전가능성,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(10점), 면접평가(10점), 가산점(5점)을 합산하여 **총점(25점)의 40% 이상(10점)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**합니다.

※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처리

7. 시험 가산점

가. 취업지원대상자

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
※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2)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3)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가산점만 인정됩니다.

※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(☎1577-0606)

나.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

1)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」 별표4(별첨)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) 응시자격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,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.

3) 어학능력 자격증은 **최종시험예정일(21.12.14.)을 기준으로 2년 이내** 것만 인정됩니다.

4) 가산 자격증은 **원서접수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.**

※ **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한 자격증 중 최종시험예정일(21.12.14.)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만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.**

8. 최종합격자 결정 : 필기시험(50%), 체력검사(25%), 면접시험(25%)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* 관련근거 :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 제3항1호

※ 최종합격자는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 18조의2(임용 또는 임용제정의 유예)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.(참고 : 「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신청방법 알림」)

9. 교육 및 임용

가. 교 육 : 2022년 2월 19일(토) 해양경찰교육원 입교(예정)

※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.

※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,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(관련근거 :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9조(채용 후보자의 자격상실))

나. 임 용 :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입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

10. 제출서류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시 추가(보완)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**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**

11. 유의사항

가.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다.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(응시연령, 가산점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※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-1호 참조

라.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**응시표**와 **신분증 원본**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**소지**하여야 하며 **응시표,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 아울러, 위에 열거한 신분증 외 **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**

마. 모든 시험은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채용분야 및 응시지역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

바.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『채용공고』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kcg.go.kr>)에 게재 예정이며, 응시자는 시험시간, 장소,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※ **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
사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.

※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.

아. 색약(약도)자의 경우 경찰병원,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(색각경)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**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**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자.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 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차.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*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」 [별지 제9호]에 따른 「채용후보자 등록원서」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7조(채용후보자의 등록) 제2항에 따라 **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**합니다.

카. **해양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·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,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타.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파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(☎032-835-23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